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2023. 3. 24.(금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3월 17일

(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홍만표)

가. 제안이유

○ 국가시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시설물의 원활한 개축사업 추진을 해나가고자 하며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국가시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(안 제3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박영균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시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교육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제3조에서는 “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”의 근거법령을 적용하였으며,
- 조례안 제3조에 개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6호 「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」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.
-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개축사업의 경우 대부분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유형 중 40년 경과 노후 건축물 중 안전 등급 C등급 중 구조적 결함으로 보수·보강이 불가능한 경우(정밀 안전 진단 또는 정밀 안전 점검 보고서 확인)와 보수·보강 및 노후건물 개선(리모델링을 포함)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 사업비의 70%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됨

- 충청북도교육청의 미래학교 검토위원회의 평가 기준 등이 개축심의 위원회의 역할과 중복 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

-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충청북도 내 사립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하며, 부속건물(창고, 사택, 숙직실, 조립식건물 등)”을 “공립유치원, 공·사립 초·중·고·특수학교, 직속 기관,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하며, 부속건축물(창고, 사택, 숙직실, 별도의 경량철골조 건물 등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”를 “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별표8”을 “별표 8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관리조례”를 “관리 조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교육시설물”이란 <u>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충청북도 내 사립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하며, 부속건물(창고, 사택, 숙직실, 조립식건물 등)은 제외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공립유치원, 공립·사립 초·중·고·특수학교, 직속기관,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하며, 부속건축물(창고, 사택, 숙직실, 별도의 경량철골조 건물 등)</u>-----.</p>
<p>제3조(기능) ①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<u>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D등급(미흡) 또는 E등급(불량)인 교육시설물</u></p> <p>2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<u>별표8</u>에 따른 C등급(보통) 판정을 받은 교육시설물로 보수·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(리</p>	<p>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<u>시설물의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</u></p> <p>2. ----- <u>별표 8</u> ----- ----- -----</p>

모델링을 포함한다)에 필요한
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
트 이상 소요되는 경우

3.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
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
있다.

1.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
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
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장가
격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
경우

2. ~ 5. (생략)

<신설>

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관리 조례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
진하는 경우

관계법령

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약칭: 시설물안전법)

[시행 2021. 9. 17.] [법률 제17946호, 2021. 3. 16., 일부개정]

제16조(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)

-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 1.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2.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·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